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 관련 가중처분 적용기간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관련 가중처분시 차수 계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 중 “위반행위를 한”을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반복행위의 기준일은 영업정지 처분일”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로, “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 중 “위반행위를 한”을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위반행위에”를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로, “후에”를 “후”로,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

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연 락 처	(044) 200 - 4828